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560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12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과제 제안자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음.
- 이에 과제 제안자의 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·결산 등 소관 전문 분야에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연구용역 제안부서’ 정의를 마련하여 연구용역 과제 제안 부서 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함(안 제2조제3호 신설).
- 나. 연구용역 제안부서의 정의를 하위 조항에 반영함(안 제6조, 제9조 및 제10조제1항).
- 다. 그밖에,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부서를 명확히 표현함(안 제10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연구용역 제안부서”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(이하 “의회사무처”라 한다) 각 부서,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”를 “연구용역 제안부서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상임위원회”를 “연구용역 제안부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임위원회”를 “연구용역 제안부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과”를 “연구용역 제안부서”로, “작성하여”를 “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법제과는 그 보고서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2. (생    략)<br>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2. (현행과 같음)<br>3. “ <u>연구용역 제안부서</u> ”란 <u>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(이하 “의회사무처”라 한다) 각 부서,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.</u> |
| 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<u>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</u> 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② (생    략)          | 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① <u>연구용역 제안부서</u> -----<br>-----<br>-----.<br>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· ② (생    략)<br>③ 법제과와 <u>상임위원회</u> 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 | 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 <u>연구용역 제안부서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법제과 및 <u>상임위원회</u> 에서 수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<u>연구용역 제안부서</u>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. ~ 3. (생략)

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과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정책위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연구용역 제안부서-----  
-----  
----- 작성하여  
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법  
제과는 그 보고서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